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1. 회계계약제도과-5683(2025.11.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5.12.31.까지에서 **'26.6.30.까지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 **완화**(§26②)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 (입찰보증금)5%→2.5%, (계약보증금)10%→5%, (계약이행보증금)40%→20%

※ 검사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은 제외

3. 이에, 시·도 및 시·도교육청은 시·군·구,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 특례가 연장되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2. 특례내용(요약)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무과장), 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 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 인천광역시장(회계담당관), 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 대전광역시장(회계재산과장), 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회계과장), 경기도지사(회계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회계재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 부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회계정보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재무행정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관리과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정복지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정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예산재정과장), 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한건설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주무관 **위형복** 행정사무관 대결 2025. 12. 23. **홍성권**

협조자

시행 회계계약제도과-6749 (2025. 12. 23.)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786 팩스번호 044-204-8967 / whb1209@mail.go.kr / 대국민 공개